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림청

조 치 기 관 산림청

내 용

보조금법 제27조, 제28조, 제31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액의 규모가 큰 농림축산식품부 등 [표 Ⅲ-3-30]의 12개 중앙관서를 표본으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된 연도별 10억 원 이상 보조금의 집행잔액 관리 및 정산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였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미회수 현황 분석결과]

점검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2014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지자체 보조금사업명: 문경시 저소득층 LED조명교체)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에 교부한

보조금 11억여 원 중 집행잔액 3억여 원이 국고에 미반납되었는데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등 합계 8,011백만여 원(2012회계연도: 6,432백만여 원, 2013회계연도: 406백만여 원, 2014회계연도: 538백만여 원, 2015회계연도: 635백만여 원)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비롯하여, [표 Ⅲ-3-30]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11개 중앙관서가 계 69,510백만 원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

[표 Ⅲ-3-30] 연도별 10억 원 이상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미납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번	기관	미납액				합계(부처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	농림축산식품부	2,482	5,996	13,394	11,053	32,925
2	국토교통부	0	4,799	6,293	3,676	14,768
3	산업통상자원부	6,432	406	538	635	8,011
4	해양수산부	2,004	449	1,076	1,269	4,798
5	고용노동부	0	0	343	2,555	2,898
6	중소벤처기업부	357	6	676	1,314	2,353
7	문화재청	0	0	1,879	20	1,899
8	환경부	574	0	0	835	1,409
9	산림청	0	0	221	166	387
10	문화체육관광부	51	0	10	0	61
11	여성가족부	0	0	0	1	1
12	농촌진흥청 ^{*)}	0	0	0	0	0
합계(연도별)		11,900	11,656	24,430	21,524	69,510

주: 농촌진흥청은 미납된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례) 농림축산식품부의 집행잔액 관리방식 및 문제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위해 경상북도에 교부한 보조금 7,681백만 원의 집행잔액 3,114백만 원 중 2,520백만 원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등 [표 Ⅲ-3-30]과 같이 2012~2015회계연도 기간 중 계 32,925백만여 원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있어 12개 기관 중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표 Ⅲ-3-31]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보조금 18조 6,069억 원 중 5조 6,138억 원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Ⅲ-3-3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집행잔액 등이 미확인된 보조금 현황

(단위: 억 원, %)

2012회계연도			2013회계연도			2014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합계		
보조금 총액	미확인 금액	비율															
32,448	11,078	34	33,918	9,469	28	35,720	9,643	27	41,335	10,887	26	42,648	15,061	35	186,069	56,138	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이번 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를 점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법 제38조 및 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2018. 1. 2.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3조의3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보조사업자로부터 반납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적정성을 검토¹⁾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정산·관리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일임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형식적으로 정산 결과를 확정하는 업무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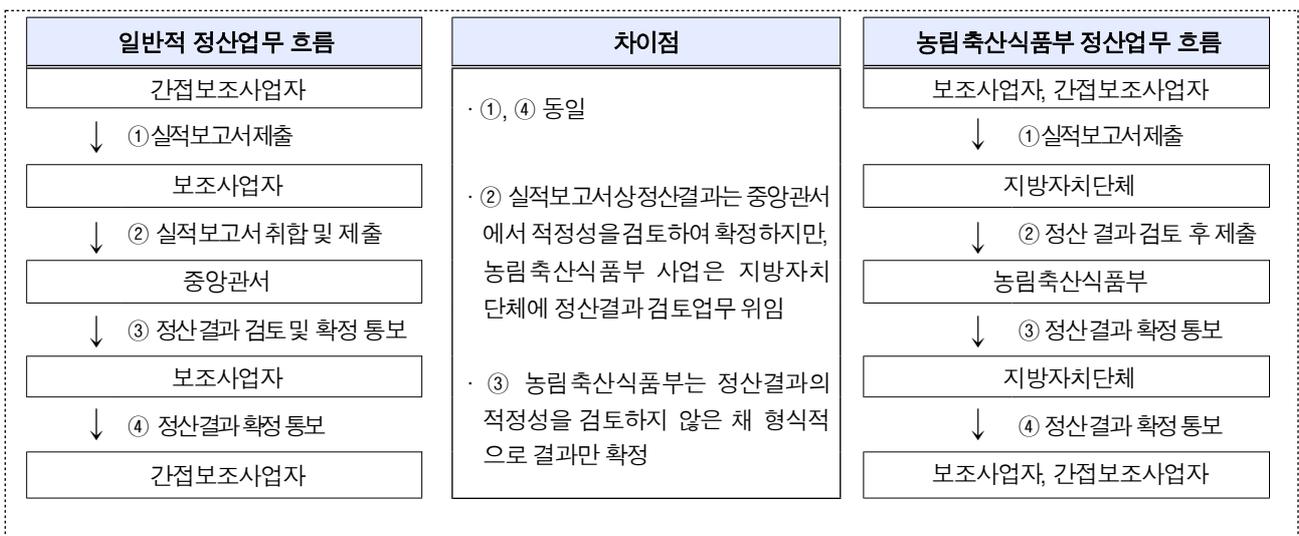
반면 이 건 집행잔액 관리실태 점검대상으로 삼은 고용노동부 등 11개 중앙

1)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적보고서 작성과 적정성 검토를 함께 하는 것임

관서²⁾ 중 정산 결과의 적정성 검토 등 보조금 정산 관리·감독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9호)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한정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산 결과 적정성 검토 사무를 위임한 사례는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사례는 없었다.

즉, [그림 III-3-5]와 같이 일반적인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업무의 경우 중앙관서는 제출된 실적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산 결과가 적정한지 관련 증거서류를 검토한 후 정산 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산 결과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정산 결과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다.

[그림 III-3-5] 일반적인 보조금 정산업무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산업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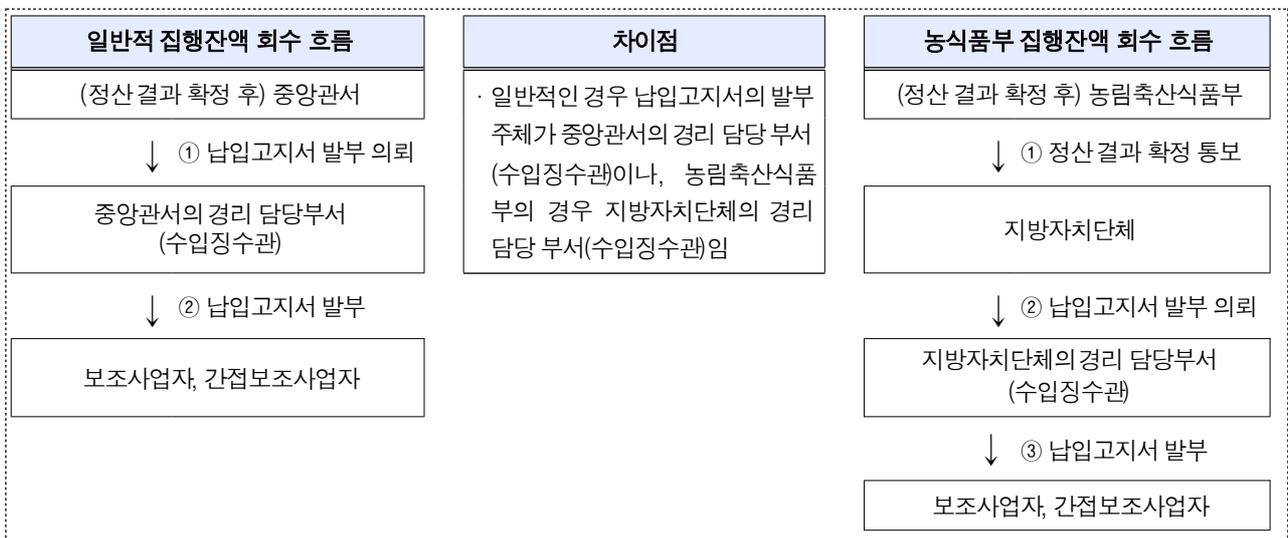


자료: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 재구성

2)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중앙관서(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

또한 [그림 Ⅲ-3-6]과 같이 대부분 중앙관서의 경리 담당 부서에서 납입고지서의 발부 등 보조금 집행잔액의 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력 없이는 집행잔액 현황이나 적정하게 회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림 Ⅲ-3-6] 일반적인 집행잔액 회수업무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수업무 비교



자료: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 재구성

[재정소멸시효 완성이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회수 곤란]

이번 감사 중 시·도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앙관서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요구할 수 있는 재정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보조금 집행잔액을 시·도 세입으로 처리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인천광역시는 2015. 9. 14. 2008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관련 보조금의 집행잔액 68백만 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환 요구권이 시효 완성이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위시의 세입으로 처리하여 시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표 Ⅲ-3-32]와 같이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관서의 보

조금 집행잔액 반환 요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총 815백만 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시·도의 세입으로 처리하는 등 각 중앙관서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 국가로 반환되어야 할 재원이 시·도의 세입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표 Ⅲ-3-32] 재정소멸시효가 경과된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자체 세입으로 처리된 현황(2012~2016년)

(단위: 백만 원)

연번	지자체명	세입처리일	세입처리된 국고금액	합 계
1	인천광역시	2012. 7. 26.	245	415
		2013. 5. 28.	19	
		2015. 9. 14.	145	
		2016. 2. 22.	6	
2	대구광역시	2014. 6. 30.	1	1
3	전라남도	2014년 ^{주)}	384	384
4	충청남도	2016. 8. 31.	3	15
		2016. 11. 8.	12	
합 계				815

주: 전라남도는 1년간 세입처리한 총금액만 자료 제출
 자료: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보조금 집행잔액 미회수액이 있는 이 건 관련 중앙관서들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보조금 집행잔액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잔액을 신속히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미확인된 보조금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는 등 보조사업자 및 위 관서의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림청장은 보조금 집행잔액 미회수액 및 이자를 회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